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 
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
심사보고서

2008. 9. 25.

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접수일자 : 2008년 9월 11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9월 19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08. 9. 23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송요철)

가. 제안이유

- 『정부조직법』의 전부개정으로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인용되고 있는 행정각부 및 장관명칭의 개정이 필요하나, 단순한 명칭병정 사항이므로 개별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의 명칭을 변경
  - “행정차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
  - “건설교통부”를 “국토해양부”로
  - “상공부”를 “지식경제부”로
-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장관의 명칭을 변경
  -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
  - “예산청장”을 “기획재정부장관”으로

- “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을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
- “재무부장관”을 “기획재정부장관”으로
- “보건복지부장관(보건사회부)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으로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권오운)
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행정각부 및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명칭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』 등을 포함하여 총12개의 조례임.
-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명칭변경 등에 국한하여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됨.

### 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#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○ 「정부조직법」의 전부개정으로,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인용되고 있는 행정각부 및 장관명칭의 개정이 필요하나, 단순한 명칭변경사항이므로, 개별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,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의 명칭을 변경.

-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
- 건설교통부 → 국토해양부
- 상공부 → 지식경제부

나.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장관의 명칭을 변경..

- 행정자치부장관 → 행정안전부장관
- 예산청장 → 기획재정부장관
- 교육인적자원부장관 → 교육과학기술부장관
- 재무부장관 → 기획재정부장관
- 보건복지부장관(보건사회부) → 보건복지가족부장관

※ 조례 : 12건(14개 조항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 제22조 (행정각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※ 생략사유 : 법규상의 단순 명칭인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.

(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.

##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**행정안전부장관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조제6호 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”을 각각 “**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**제2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비고란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**보건복지가족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**제3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0호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**행정안전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**제4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제4호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**행정안전부**”로 한다.

**제5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중 “상공부령”을 “**지식경제부령**”으로 한다.

**제6조(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**행정안전부**”로 한다

**제7조(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재무부장관”을 “**기획재정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**제8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건설교통부”를 “**국토해양부**”로 한다.

**제9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**보건복지가족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**제10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교육인적부장관”을 “**교육과학기술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**제11조(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 제7호 중 “건설교통부”를 “**국토해양부**”로 한다.

**제12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보건사회부장관”을 “**보건복지가족부장관**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